

#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인사위원회공고 제2022-9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임기제공무원(방호)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방호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노원구의회	1. 의회 방호, 의회 방문객 안내, 의회 질서유지 2. 의회 차량 운전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2.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 3. 응시 자격 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응시자격(자격기준)

임용등급	자격기준
지방시간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선택제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 직무분야 실무경력 : 청원경찰, 경호, 경비, 방호 실무 경력 등
마급	※ 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2. 7. 27.(수) ~ 7. 29.(금), 3일간
- 나. 접수처 : 노원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노원구청 8층)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의회 8층 의회사무국 의정팀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노원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우편접수시 5,000원 상당 우체국 통상환증서 반드시 송부)
  - ※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송부 후 반드시 확인 전화요망(02-2116-3384)
  -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일자	시간 및 장소	
2022. 8. 8.(월)	2022. 8. 10.(수)	2022. 8. 12.(금)	노원구의회 내 (추후통보)	2022. 8. 16.(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가. 1차 서류전형

- 접수된 응시원서 등 관련 제출서류 확인 후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나. 2차 면접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대상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합격자는 고득점자로 하며, 신체검사 및 사전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에 의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5. 근무 조건 및 보수

가. 임용예정일 : 2022. 9. 1.(목)

나. 임용기간 : 임용예정일로부터 1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다. 근무조건 : 주 35시간 근무

라. 보수(연봉)수준 : 19,479천 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가입

##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 후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아.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카.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매)

※ 수입증지 구매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우체국에서 5,000원 상당 통상환증서 구입 후 송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기타[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시험일정 등이 변경됨)
- 사.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자. 기타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 02-2116-3384)